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8 선고 2019가단202985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송]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태우

피 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준한

변론 종결 2019. 7. 12.

판결 선고 2019. 11. 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0.부터 2018. 6.

10.까지는 연 6%, 2018. 6. 11.부터,

가. 피고 B은 2019. 2. 25.까지 연 10%, 2019. 2.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B은 각 2019. 11. 8.까지는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0.부터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원고의 E에 대한 2016. 11. 4.자 대여금 청구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부분

1) 원고는, E가 2018. 4. 10.부터 3달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0.부터 연 10%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한이익 상실이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기한이익 상실 전에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2018. 4. 10.부터 지연손해금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개정되어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4. E와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11. 4. E에 게 1억 원을, 11. 15.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4. 일금 1억 5,000만 원을 E에게 빌려주고 E는 이를 차용하였다.

1.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2028. 11. 3.로 한다. 단, 2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2년 상환으로 한다.

2. 이자는 연 6%로 하고 매월 1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3.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 지연이자 10%로 하고 비율로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하여 지불해야 한다.

6. E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본건 이자의 지불을 3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

※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E는 본 차수금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E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하여

[1]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시 매년 발생하는 배당금에서 먼저 차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E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2018. 4. 10.부터 3개월 이상 지급하지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의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2018.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 D의 주장

이 사건 특약 1조 1항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배당금에서 E의 이자를 먼저 차감하여야 하는바, E의 2016년도 배당금 2,000만 원 및 2018. 4.경부터 매달 지급받아야하는 유사배당금 500만 원으로 E의 이자에 충당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E가 2018. 4. 10.경부터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8. 4. 10.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18. 6. 10.인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6. 10.경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E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 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8. 6. 10.까지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6%의 약정이자, 2018. 6. 1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시인 2019. 11. 8.까지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2019. 11.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4. 10.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한이익 상실 전에 피고들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개정되었으므로,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이유 없다).

라. 피고 C, D의 항변 등

피고 C, D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조 제1항은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규정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E의 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자동 상계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배당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 D의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윤희